

고소·고발 요령 및 무고죄 성립의 이해

[업무 중 범죄행위 발생시 고소·고발을 하는 경우의 요령 및
고소·고발 시 무고죄 성립 가부에 대한 검토]

I. 고소·고발

1. 고소·고발 근거 법령 및 차이점

	고소	고발
주체	제223조(고소권자) 범죄로 인한 <u>피해자</u> 는 고소할 수 있다.	제234조(고발) ① <u>누구든지</u>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.
방법	제237조(고소, 고발의 방식) ① 고소 또는 고발은 <u>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</u> 하여야 한다.	
공소제기여부 결정 기간	제257조(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)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	
고지	<p>제258조(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)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<u>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,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</u>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59조(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)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<u>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</u>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<u>그 이유</u>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</p>	
검찰 결정에 불복방법	<p>「검찰청법」 제10조(항고 및 재항고) ① <u>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</u>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(更正)하여야 한다.</p>	
	고소권자는 위 ‘항고’ 를 거친 후 추후 관할 <u>고등법원</u> 에 재정신청 가능	-

- ※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은 「형사소송법」의 조항에 해당.
- ※ 즉, 고소는 범죄행위의 ‘피해자’가 하는 것이고, 고발은 범죄행위를 발견한 자라면 ‘누구든지’ 가능함.

2. 고소·고발에 있어서 요령

가. 증거자료 확보

- 범죄행위를 촬영한 CCTV영상이 있다면, 해당 영상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
- 해당 범죄행위를 본 직원 아닌 제3자가 있다면, 양해를 구하여 제3자에게 범죄행위와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거나, 적어도 연락처를 확보해 놓을 것 (직원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이 수사에 있어 신빙성이 높음)
-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있는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을 것
-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에는,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시일 이내에 받는 것이 정확성, 신빙성 측면에서 바람직함

나. 신속한 수사요청

-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을 할 경우,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및 범죄자 체포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음

1)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공소제기여부가 결정 안되는 경우도 많음.

II. 무고죄 성립의 이해

1. 관련 법령

형법	<p>제156조(무고) 타인으로 하여금 <u>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</u>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----	---

2. 무고죄의 성립 요건

- 무고죄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‘목적’으로 ② 공무원(경찰관 등 포함)에 대해 ‘허위의 사실’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음.
- 심지어, ‘허위의 사실’을 신고한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‘형사처분의 대상’이 될 수 있어야 함. 즉,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. (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도15398 판결)

3. 고소·고발시 무고죄 고려

- 형사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실관계·증거자료가 불분명한 사정 등으로, 피고소(발)인의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혼돈될 수 있음.

-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나 정확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고소·고발이 필요한 경우라면,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무고죄성립에 대한 큰 우려 없이 고소·고발을 진행하여도 무방함.

붙임 : 1. 고소·고발장 양식 1부.